

##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2항제4호”를 “제2조제2호라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3항 중 “법 제2조제2항”을 “법 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19조의8제2항 후단 중 “금액”을 “금액의 100분의 200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호 중 “법 제2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가목”으로,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2조제2항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나목”으로,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회사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 제2조제2항제3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다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조제2항제4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라목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법 제2조제2항제1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2 중 “법 제31조제2항”을 “법 제31조”로, 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금융회사등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·제5호 및 제7호의 업무

제24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”를 “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·제4호 및 제6호”를 “법 제23조제1항제4호·제5호 및 제7호”로 한다.

제25조제1호나목 중 “제20조제1호부터 제5호”를 “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